#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<br>번 호 | |
|---|---|

| 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<br>제 출 자 : 성 주 군 수 |
|---|

1. 개정이유

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원활한 사업단 운영 및 저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기금 존치가 필요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(안 제10조2)

- 존속기한 : 2019년 12월 31일 → 2024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: 2019년 9월 3일 심사완료(기획감사실-8773)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: 2019년 9월 2일(가족지원과-35651)

마. 입법예고: 2019. 9. 19.~2019. 10. 10. (21일간)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 | 제1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24년 12월 31일 --------. |